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38296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제428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38296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5. 17 선고 2000나53235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B은행

【피고,피상고인】 기BABA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CA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5. 17. 선고 2000나53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판단하였다.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 한국왕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DA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대출을 받는 데에 피고가 1997. 12. 12. 근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DA은행에서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어음에 관하여 어음할인대출을 받았다.

소외 회사가 1998. 3. 30. 부도 처리되자, DA은행은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일·발행지·지급지·수취인이 각 백지인 상태로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원고는 같은 해 6. 29.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DA은행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보증부 대출이 어음할인방식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채권자(DA은행)는 보증채무이행을 받는 즉시 기금(피고)에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어음은 만기에 어음요건을 완비하여 제시되고 그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보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3조 제2항).

나. 판단

위와 같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원고가 어음의 지급기일 이후에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는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당연한 전제로서 만기에 어음요건을 완비하여 제시되어 그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보전되어 있는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DA은행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일 및 수취인이 모두 백지인 채로(발행인의 명칭에 부기된 장소가 있으므로, 이를 발행지 및 지급지로 볼 수 있다.)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만기에 어음요건을 완비하여 제시되어 그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보전되어 있는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14조 제6호는, 기금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기금의 동의 없이 보증부 대출에 관련된 물적·인적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포기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DA은행이 약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음상 권리를 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약관 제14조 제6호가 정하는 면책요건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이규홍